

윤리 강령

캐존테크놀로지(주)는 『준법경영 헌장』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이를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캐존테크놀로지(주)(이하 "회사") 및 그 임직원(이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과정 및 회사 내 생활 속에서 준법에 근거한 의사 결정과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준법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강령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하며, 그 구체적인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정규직 임직원
2. 회사의 무기 또는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인턴직

제2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제3조 (임직원의 기본원칙)

- ① 임직원은 캐존테크놀로지(주)의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준법경영의 경영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령과 회사의 규정 및 업무 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사회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또한 임직원은 부정, 비리 및 부패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회사의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이를 위배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준법경영의 원칙 아래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임직원은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안전 의식으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직무 수행 및 태도)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경영원칙, 규정 및 업무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의 성과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완성한다.
- ② 임직원은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며,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접대, 향응 편의제공 등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아니 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정보자산, 영업비밀 등이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 하며,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한다.
- ④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지 아니 하며,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접대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 (公私의 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사적인 사항이 공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접대비, 회식비, 부서운영비 등)을 목적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와 당해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시 업무효율성과 손익을 고려하여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제8조 (임직원 상호 관계)

- ①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상호 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한다.
-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당해 정보가 회사 내 다른 임직원들에게 유출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정보자산의 보호)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대표이사, 소속 부서 팀장 등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의 보안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영업비밀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
- ③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생성 또는 인지하게 되는 회사의 보안 사항을 적절한 절차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사외로의 유출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자산을 일체 남김 없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퇴사 시 보안에 관하여는 회사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 및 위험예방)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및 임직원의 안전을 회사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2조 (고객 존중)

- ① 회사는 회사의 존재 가치가 고객과 함께함으로써 성장함을 인지하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 존중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

제13조 (고객 만족)

- ①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 없이 창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 교육, 자료 등과 최상의 기술적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① 회사는 고객의 의견과 제안 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 (고객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항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에 관한 정보를 회사의 영업비밀과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된 자료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고객의 정보자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제4장 거래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5조 (거래법규의 준수)

①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거래업체(고객과 협력회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와의 관계에 있어 거래 지역의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거래업체에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편법 행위를 하지 아니 하며, 상호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 (자유경쟁추구)

①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는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통하여 국내외 고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며, 경쟁업체에 대하여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7조 (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거래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

② 임직원은 그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협력회사에 대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특히 거래를 조건으로 어떠한 형태의 개인적 편의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적기에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며, 거래 과정 또는 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 후 보완한다.

④ 임직원은 협력회사의 영업비밀, 보안정보를 당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상호 발전의 추구)

① 회사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회사와 공동의 발전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회사는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상호 합리적인 이익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9조 (적극적 검토 및 직원 존중)

①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업무 수행 중 협력회사의 정당한 요구, 청원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수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②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상호 존중의 자세를 견지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불손한 언행, 차별 대우 또는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지 아니 한다.

③ 회사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협력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애로사항 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0조 (임직원 존중)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 등 기본권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회사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임직원 개개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외부의 압박, 강요 등이 없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업무의 성과 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직원의 인권 및 노동)

① 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임직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이는 당사의 임시 직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며,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대한민국의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 받는다.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의 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숙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22조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교육, 승진, 처우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위협 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이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채용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3조 (인재육성)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회사의 무형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직원의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4조 (창의성 촉진)

- ① 회사는 임직원이 독창적인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제25조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

- ① 회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및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수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사가 제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 ③ 회사는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에 제한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제반 시설물, 장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 ④ 회사는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초기 대응과 함께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6조 (무관용 원칙)

회사는 임직원의 부정, 부패, 비리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여기서 무관용 원칙이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게 대하여 원칙 없이 상벌규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관용 없이 회사의 상벌규정 원칙,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6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7조 (주주 권익의 보장)

- ① 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위하여 보장하고, 주주의 권리 행사를 존중하며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② 회사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경영정보를 적시에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제7장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8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 ①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실하게 성장·발전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